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 박성준·황정아·허종식

진선미ㆍ허 영ㆍ정성호

강유정 • 한민수 • 윤종군

박희승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.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한편,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.7%로 OECD 평균(0.2%)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,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.

또한,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한 번도 바뀐 적 없어,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.

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항, 제24조, 제28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"5억원"을 "9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5억원"을 "9억원"으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5억원"을 "9억원"으로 한다. 제28조제1항 단서 중 "5억원"을 "9억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, 제24조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일괄공제) ① 거주자의 사	제21조(일괄공제) ①
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	
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	
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	
액을 합친 금액과 <u>5억원</u> 중 큰	<u>9억원</u>
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	
만, 제67조 또는 「국세기본	
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	
없는 경우에는 <u>5억원</u> 을 공제한	<u>9억원</u>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 제18	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
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	
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	
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	
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	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	
도로 한다. 다만, 제3호는 상속	
세 과세가액이 <u>5억원</u> 을 초과하	<u>9억원</u>
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 제13조	제28조(증여세액 공제)

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	र्न
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(증	여
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	증
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)은	상
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다
만,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신	하
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「국	세
기본법」 제26조의2제4항 또	
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	.로
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	아
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	가
액이 <u>5억원</u> 이하인 경우에	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	

② (생 략)

9억원
② (현행과 같음)